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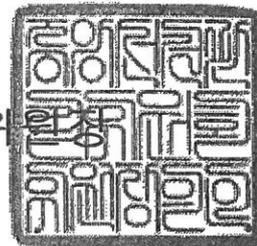
수 신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대표자
(경유)

제 목 재외투표 참관인등 신고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투표소 참관인 및 재외투표 회송 참관인 신고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외투표 참관인등 신고 안내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김덕화, 행정사무관 배정한 선거2과장

전결 03/02
유훈옥

협조자

시행 선거2과-1128

(2020.03.03.) 접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114호

/ http://www.nec.go.kr

전화 (02)502-4515

/전송 (0505)058-1135

/ dhkim529@nec.go.kr

/ 공개

재외투표 참관인등 신고 안내

I 재외투표 참관인 신고

1] 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218조의20, 규칙 제136조의22)

가. 신고권자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나. 신고기한 : 2020. 3. 29.(선거일전 17일)까지

다. 신고인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재외투표소 별로 각 2인

라. 신고처 : 해당 공관의 재외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2과 ☎ (02)504-5354, fax 0505-058-1135, E-MAIL : okvoting@nec.go.kr)에 제출해 온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간주, 즉시 해당 공관에 신고내역을 통지할 예정임.

마. 신고방법 : 투표참관인 신고서 [덧붙임 1]를 (국제)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

※ 공관 주소등 : 외교부(<http://www.mofa.go.kr>)-외교부소개-재외공관-재외공관정보

◆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 언론인 등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② 투표참관인 교체 등

-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재외선관위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 투표기간 중에는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20③)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법 제218조의20⑥)

③ 투표참관 방법

투표참관인은 재외선관위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재외 투표소내 참관인석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상황, 재외 투표 인계·인수 상황 등을 참관함.

④ 투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 투표참관인은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상황 등을 참관할 수 있음.
-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투표참관인은 재외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참관 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⑤ 투표참관인의 수당 등(규칙 제90조)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1일 5만원(\$42USD 정도)으로 하되,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

※ 각 나라의 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음.

II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신고

1 회송참관인 역할

외교부장관이 인계한 재외투표 외교행낭의 회송용봉투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참관

2 회송참관인 신고(법 제218조의21, 규칙 제136조의23)

가. 신고권자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나. 신고기한 : 2020. 4. 1.(선거일 전 14일)까지

다. 신고인원 : 정당별 2인

라.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2과)

마. 신고방법 : [덧붙임 2]에 의한 신고서를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 동·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법 제60조② 해당자)
- ※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었어야 함.

3 기 간 : 회송기간(4. 7. ~ 4. 15.) 중 매일 09:00 ~ 회송업무종료시까지

※ 회송기간 및 참관시간은 재외투표 도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관장소 :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2층 대회의실([덧붙임5] 참조)

5 회송참관인 교체 등

신고한 회송참관인은 언제든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회송기간 중에는 회송장소에서도 가능

⑥ 회송참관 방법

회송참관인은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회송장소내
참관인석에서 재외투표 인계·인수 과정 등을 참관

⑦ 회송참관인의 수당 등(규칙 제90조)

수당 5만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되, 참관 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

- 덧붙임 1. 투표참관인 신고서 1부.
2. 회송참관인 신고서 1부.
3. 관계 법조문 1부.
4. 재외투표소 현황(예정) 1부.
5. 인천국제물류센터 약도 1부.

[덧붙임1]

투표참관인 신고서

1. 정당의 명칭

2. 참 관 인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제의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성명”란에 한글 이름과 ()인에 영문대문자 이름을 함께 적고, “주소”란에는 국외기소지를 적습니다.

[덧붙임2]

회송참관인 신고서

1. 정당의 명칭 :

2. 참 관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참관일자	비 고

회송참관인을 위와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과 교체"라 적는다.

[덧붙임3]

관 계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외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161조(투표참관)

① ~ ⑥ 생략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 ⑭ 생략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
-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5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 ①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으로부터 재외투표를 인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보내기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위원등이 법 제218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하고 책임위원등과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21제2항 및 법 제218조의22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7 서식에 따른다.
- ④ 법 제218조의22제1항의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록은 별지 제59호의18 서식에 따른다.
-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제136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인계받은 서류 등을 법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함께 보내야 한다.
-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는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회송기간, 회송노선 등을 고려하여 공관 소속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하거나 외교행낭을 운반하는 교통편에 동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사람을 지정하여 공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⑦ 외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⑧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제7항에 따른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4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덧붙임5]

인천국제물류센터 약도

